

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내용을 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3조)

나. 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
다.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라.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1조, 제9조, 제11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”을 “조례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설치)”를 “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효율적인 운용을”을 “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여성업무”를 “여성정책 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의회”를 “구미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”로,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되,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,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,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조성·적립·관리·운용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, 여성 복지증진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여성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9조(중전의 제7조)제3항 중 “의회”를 “시의회”로 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9조)제2항 중 “의회”를 “시의회”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
시장이 위촉한다.

1. ~ 4. (생략)

⑤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
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
다.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---- 위촉하되, 전체 위원 수의
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
구성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
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
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
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
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
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
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
으로 한다.
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
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
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
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
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
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
대행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

<신 설>

에 관한 사항

2. 기금의 조성·적립·관리·운용

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, 여성

복지증진 등 사업 추진에 관

한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

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

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

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
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

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

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
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
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

결한다.

④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

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

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

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

결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

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여성

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7조(기금운용계획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 (생략)

제9조(기금의 결산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설>

제10조·제11조 (생략)

제9조(기금운용계획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 의회-----
--.

제10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
제11조(기금의 결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의회-----
--.

제12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3조·제14조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42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~ ② (생략)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(생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 ~ ⑥ (생략)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제3조(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)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소 관 부 서		가 족 정 책 과
입 안 자	과 장	민 명 숙
	팀 장	백 은 영
	담 당 자	김 수 람 (480-6538)